

의안번호	2213969
의 퇴 인	이재정의원
회 답 일	2025.11.12.
추 계 번호	25D591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0억 9,800만원, 2030년 25억 9,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억 9,400만원(연평균 24억 1,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양지방법원 신설	인건비	1,853	2,278	2,334	2,393	2,451	11,309	2,262
	기본경비	106	130	133	137	140	646	129
	자산취득비	139	—	—	—	—	139	28
합계		2,098	2,408	2,467	2,530	2,591	12,094	2,419

주: 현행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현 안양지원(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관할)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에 광명시를 포함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별표1](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2](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7](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및 광명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인건비(보수·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의 규모는 현행 18개 지방법원의 법원공무원 1명당 평균 관할인구(4,646명)를 적용하여 추정함

[표 2] 지방법원(지원포함)별 법원공무원과 관할인구 현황: 2025년

(단위: 명)

법원명	법원공무원	관할인구	법원명	법원공무원	관할인구
수원지방법원	1,360	8,855,152	울산지방법원	256	1,457,580
인천지방법원	774	4,277,781	서울서부지방법원	294	1,329,043
서울북부지방법원	332	2,217,641	부산지방법원	661	3,266,598
서울중앙지방법원	1,274	2,078,212	창원지방법원	683	2,868,849
서울남부지방법원	405	1,974,248	의정부지방법원	728	3,623,259
대구지방법원	991	4,895,013	청주지방법원	379	1,591,177
대전지방법원	769	3,966,416	전주지방법원	467	1,738,690
광주지방법원	689	3,197,241	제주지방법원	189	670,368
서울동부지방법원	317	1,732,684	춘천지방법원	455	1,477,269
합계				11,023	51,217,221

주 1. 법원공무원 정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지방법원별 정원임

2. 관할인구는 법원행정처 발간 「2025 사법연감(2023.1.~2023.12.)」 p745에 따른 관할구역별 인구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안양지방법원 법원공무원 정원 추정: 2025년

(단위: 명)

법원명	법원공무원	관할인구	법원명	법원공무원	관할인구
18개 지방법원	11,023	51,325,329	안양지방법원	205	1,330,590

주: 안양지방법원 관할인구는 대법원의 제출자료에 따른 관할인구임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개정안에 따른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정원(205명)에서 現 안양지원 정원(147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향소심 담당인원)과 안산지원(광명시 사건 담당인원)으로부터 전입 인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안양지방법원의 직급별 순증 인원은 다음과 같음

[표 4] 안양지방법원 법원공무원 직급별 순증 인원 추정: 2025.9. 기준

(단위: %, 명)

구분		법원공무원 직급별 비율	정원					
			안양 지방법원	現 안양지원	증원규모	전입		순증인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법원 공무원	1급	0.01	—	—	—	—	—	—
	2급	0.16	—	—	—	—	—	—
	3급	0.48	1	1	—	—	—	—
	3·4급	0.14	—	—	—	—	—	—
	4급	2.98	6	5	1	—	—	1
	4·5급	1.23	3	2	1	—	—	1
	5급	8.89	18	5	13	4	—	9
	6급	15.57	32	25	7	—	5	2
	7급	12.40	26	23	3	—	3	—
	8급	22.97	47	23	24	2	7	15
	9급	35.19	72	63	9	3	6	—
	소계	100	205	147	58	9	21	28

- 주 1. 법원공무원 직급별 비율은 전체 법원공무원(14,494명)의 직급별 비율임
 2. 안양지방법원 인원은 수원지방법원 전체 정원(1,360명) 중 안양광명 인구비율(15.1%)에 해당하는 정원(205명)을 법원공무원 각 직급별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
 3. 수원지방법원 전입인원은 수원지방법원 항소사건 담당인력(59.4명)에 안양광명 인구비율(15.1%)을 적용하여 산출함
 4. 안산지원 전입인원은 안산지원 민사(38명), 신청(21명), 형사(22명) 정원 중 광명시 인구비율(19.6%)에 해당하는 정원(16명)과 현 광명시법원 정원(5명)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안양지방법원 신설에 따른 보수,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단가는 기준연도의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¹⁾를 적용하여 추정함
- 다만,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판사 증원, 청사 신축 등의 추가재정 소요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판사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개정(2025.1.7.)²⁾으로 판사의 정원이 370명이 순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임

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3.559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전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판사의 정원이 2025년 90명, 2026년 80명, 2027년 70명, 2028년 70명, 2029년 60명 등 총 370명 증원될 예정임

- 現 안양지원청사 연면적은 19,236.79㎡인데, 개정안에 따라 안양지방법원이 신설되는 경우 협소도가 56.3%³⁾로 기준협소도 60%에 미달하게 되어 사무공간이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으나 공간재배치 등을 통하여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안양지방검찰청 증축 및 검사 등 증원
 - 현행 「검찰청법」 제3조제1항⁴⁾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양지방법원이 신설되는 경우 안양지방검찰청이 설치되도록 함
 - 이는 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아니며,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매개로 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소요인 점을 고려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으로 함

3) 現 안양지원청사 연면적(19,236.79㎡)을 기준면적[34,138.56㎡=예상 정원 258명(법관, 공무원 포함)×1인 기준면적 132.32㎡]으로 나눈 값임

4)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가. 인건비

-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안양지방법원의 인건비는 법원공무원 순증인원 (28명)에 대한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법원공무원 증원인력에 직급별 1인당 평균 연봉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법원공무원의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필요한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순증인원과 2025년 예산 기준 직급별 평균 연봉액은 다음과 같음

[표 5] 안양지방법원 법원공무원 직급별 순증 인원과 평균 연봉액: 2025.9. 기준
(단위: 명, 원)

구분		직급별 순증 인원	직급별 평균 연봉액
법원 공무원	4급	1	122,008,949
	5급	1	100,863,123
	6급	9	83,431,626
	7급	2	81,864,430
	8급	15	52,218,181
	9급	—	42,271,410
	소계	28	—

주 1. 직급별 순증 인원은 복수직 3·4급을 3급에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2. 직급별 평균 연봉액은 법원의 2025년 예산 기준임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법원공무원 인건비(보수+기관부담금)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법원공무원의 인건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법원 공무원	보수	4급	104	128	131	134	137	634
		5급	86	106	108	111	114	525
		6급	641	787	806	826	845	3,905
		7급	140	172	176	180	184	852
		8급	668	821	841	861	882	4,073
		소계	1,639	2,014	2,062	2,112	2,162	9,989
	기관부담금		214	264	272	281	289	1,320
	합계		1,853	2,278	2,334	2,393	2,451	11,309

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2026년은 10개월분만 반영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 안양지방법원의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백만원) 대비 사법운영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7]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법원 공무원	보수액	1,639	2,014	2,062	2,112	2,162	—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106	130	133	137	140	646

주: 법원공무원의 보수액에 기본경비의 비중(6.47%)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안양지방법원의 순증 인원(28명)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하되, 2026년에 전액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이후에는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 (순증 인원) 법원공무원 총 28/명
- (자산취득비 단가) 2026년 기준 4,981천원 / 2027년 기준 5,080천원

[표 8] 안양지방법원의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법원 공무원	순증인원	28	-	-	-	-	-
	단가(천원)	4,981	-	-	-	-	-
	자산취득비	139	-	-	-	-	1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안양지원을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0억 9,800만원, 2030년 25억 9,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억 9,400만원(연평균 24억 1,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양지방법원 신설	인건비	1,853	2,278	2,334	2,393	2,451	11,309	2,262
	기본경비	106	130	133	137	140	646	129
	자산취득비	139	-	-	-	-	139	28
합계		2,098	2,408	2,467	2,530	2,591	12,094	2,419

주: 현행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현행 지방법원별 관할인구, 법원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비율 등을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